

문서번호	생활보장과-13181	주무관	장애인복지팀장	생활보장과장	주민생활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결재일자	2016.4.14.	길재호	유숙희	이승하	강대형	하철승	04/14 박경수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		
보도여부							
			기획예산과장	조상연			
			법무팀장	이기호			
		주무관	송수연				

**『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
설치 및 운영 조례』 제정 계획**

2016.04.11.

강 북 구

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계획

강북구 관내 장애인단체들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고, 장애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I

근거 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3조

II

제정 사유

- 강북구 장애인회관을 2016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, 개관과 동시에 강북구 장애인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

III

주요 내용

-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목적을 명시함 (안 제1조)
- 장애인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여 적합하게 사용하고자 함 (안 제3조)
- 장애인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허가를 하고자 함 (안 제5조)
- 장애인회관 사용료 면제 및 예산을 지원하여 원활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)
- 조례의 목적과 지시사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도하고자 함 (안 제10조)

IV**추진 일정**

- 입법예고: 2016.04.15. ~ 05.06.(22일)
-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: 2016. 5월 중
- 구의회 상정 · 심의: 2016. 6월(제199회 제1차 정례회)
- 조례 공포·시행: 2016. 7월 초

V**기타사항**

- 공사진행사항: 2016. 6월말 리모델링공사 준공예정
- 예 산: 2016년 예산에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및 장애인회관 운영비 반영
 - 1월~ 6월: 월 4,600천원(장애인복지지원센터)
 - 7월~12월: 월 6,000천원(장애인회관)
- 잡수익 처리: 현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전세금 6억원

붙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. 끝.